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가단5321637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현 담당변호사 임다훈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7. 18.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24,984,4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나. 4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414,964,919원 및 그 중 334,767,902원에 대하여 각 2023.
6. 24.부터 2023. 7. 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2 대출',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증하였다.

순번	대출과목	대출일자	여신기간	여신한도금액(원)	보증한도액(원)
1	일반자금대출	2019.10.23.	2019.10.23.~2020.10.23.	100,000,000	120,000,000
2	B2B 구매자금대출	2019.10.23.	2019.10.23.~2020.10.23.	400,000,000	480,000,000

나. C는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3. 6. 23. 기준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원)

대출	약정금	잔여원금	이자	계
제1 대출	100,000,000	100,000,000	24,984,461	124,984,461
제2 대출	400,000,000	18,377,809	7,736,628	26,114,437
		26,763,600	5,297,091	32,060,691
		20,000,000	4,093,385	24,093,385
		30,000,000	6,140,079	36,140,079
		3,300,000	717,194	4,017,194
		7,628,500	1,655,345	9,283,845
		9,814,007	5,905,225	15,719,232
		43,156,000	9,571,858	52,727,858
		20,000,000	4,435,933	24,435,933
		55,000,000	12,310,030	67,310,030
		1,087,460	242,735	1,330,195
		3,000,000	669,644	3,669,644
		20,000,000	4,445,280	24,445,280
		20,000,000	4,385,572	24,385,572
		22,240,526	4,967,922	27,208,448
		30,000,000	6,649,706	36,649,706
		4,400,000	973,390	5,373,390

소계	334,767,902	80,197,017	414,964,919
합계	434,767,902	105,181,478	539,949,380

다. C는 2021. 3. 4. 법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서울회생법원 2021회합100029), 그 절차에서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 중 60%는 주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2021년부터 2031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는 내용의 법인회생계획을 제출하여 2021. 10. 7. 회생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원리금에 관하여 변제에 갈음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져 신주가 발행되었다가, 주식 재병합(비율 5:1)으로 최종적으로 10,000주가 원고에 귀속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1~11,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1억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124,984,461원 및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제2 대출에 관하여 근보증한도액 4억 8,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금 414,964,919원 및 그 중 원금 334,767,902원에 대하여 2023. 6. 24.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23. 7. 3.까지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가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이상, 보증인인 피고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주장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 등의 효과는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C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중 60%에 대하여는 출자전환이 이루어졌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는 주장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출자전환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회생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출자전환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회생채권의 액수를 한도로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무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채무자인 회생회사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실시한 출자전환으로 회생채권자가 실질적으로 만족을 얻은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회생회사의 보증인의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출자전환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회생회사의 기업가치나 그 출자전환주식의 주당 가치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그 출자전환에 의하여 보증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85830 판결 등 참조).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원고가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주당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유추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권자의 권리가 희생되는 불가피한 점이 있는데도 일반 채권자와 구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대해서는 달리 취급하겠다고 입법자가 결단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특별한 예외를 정한 것이므로, 채권자가 기술보증기금이 아닌 경우까지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한동